

서울특별시의회
제328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2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

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

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

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

양질의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

인권 보호 및 일·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

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

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특히,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
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
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
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,
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2조제1호의 경우,
‘스포츠클럽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
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의하고,

□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경우,
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
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
□ 안 제9조의2의 경우,
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의 규정으로
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사용 시,
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
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